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설명회



국립중앙의료원
National Central Medical Center



주요 일정

설명회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30 ~ 11:00	참석자 등록	
11:00 ~ 11: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1:10 ~ 11:30	인사말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11:30 ~ 13:00	지정심사 계획 및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현장이송팀
13:00 ~ 13:30	질의응답	

“

참석자 소개



“

인사 말씀



content



개요

- 배경, 목적 및 근거
- 추진체계 및 절차
- 지정심사 대상 및 심사 영역
- 지정심사 효력

지정심사 세부 계획

- 지정심사 절차 및 시기
- 주요 시행절차
- 심사영역 및 기준 시점
- 시범지정 심사 대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제2차 시범 지정심사 계획

- 지정심사 절차 및 시기
- 주요 시행절차

지정심사 지표

- 교육과정
- 인력
- 교육시설
- 교육 장비

PART 1~3

1. 개요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3. 제2차 시범 지정심사 계획



개요

- 배경, 목적 및 근거
- 추진체계 및 절차
- 지정심사 대상 및 심사 영역
- 지정심사 효력



01 배경, 목적 및 근거

01. 배경

-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응급처치 업무 등 * 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응급구조사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심폐소생술시행을 위해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등
- 역량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성대학 등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함

02. 목적

- 응급의료법에 근거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및 운영지침을 규정하여, 지정제도의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시행과 우수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 기반 마련

03.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1호(응급구조사의 자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01. 추진체계



02 추진체계 및 절차

Chapter. 1 개요

02.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비고
지정심사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심의	지정심사위원회	-
공고/설명회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게시
지정신청서 제출		지정심사를 신청하는 기관	-
지정심사 시행		중앙응급의료센터(지정심사단)	-
최종 지정심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게시

03 지정심사 대상 및 심사영역

Chapter.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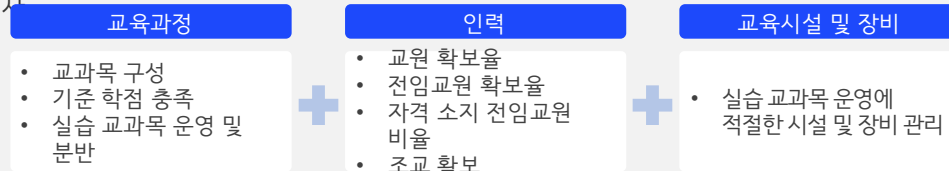
01. 지정심사 대상

-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를 희망하는 기관
 - 한 학교당 응급구조학과 1개에 한하여 지정 신청 가능하며, 분교는 별도 기관으로 간주
 - 학과명이 '응급구조학과'가 아닌 경우 지정심사 신청 전까지 학과명 변경 필요

02. 심사영역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① 교육과정, ② 인력, ③ 교육시설, ④ 교육장비 총 4개 영역

심사



- 심사 영역 및 목표

심사영역	목표
교육과정	국가 자격시험 준비 및 실무역량 강화
인력	응급의료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체계적인 강의 제공
시설 및 장비	실습수업 통한 응급의료 현장 대응 능력 강화

01. 지정심사 효력

- 지정심사 결과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지정된 경우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지정심사 결과 및 제출자료는 향후 이행점검, 재심사 및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02. 재지정제도

- 2029년 1월까지 지정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추후 법령 개정 후 재지정 절차 마련 예정

※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최대 5년 재지정 주기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재지정 주기 동안 연간 이행사항 점검 등의 절차를 시행할 수 있음

03. 지정기준 준수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수시점검을 통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지정 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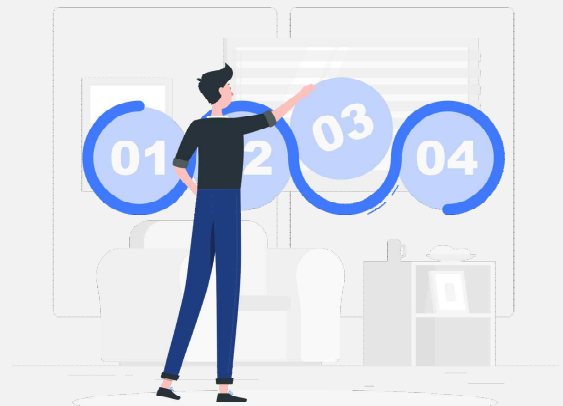
04. 중요사항 통지

- 다음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사항) 교육과정의 운영 중단, 지정기준 미달, 교육과정 또는 입학정원의 변경, 전임교원의 변동,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조교의 퇴사로 인한 채용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 공백 유예기간 적용 후 초과일부터 통지)
 - (통지방법)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로 공문 제출

“

지정심사 세부 계획

- 지정심사 절차 및 시기
- 주요 시행절차
- 심사영역 및 기준 시점
- 시범지정 심사 대비 주요 변경사항



01 지정심사 절차 및 시기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단계	지정심사 절차	일정	비고
계획	지정심사단 구성	'26년 10월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고	설명회	'26년 8월	중앙응급의료센터
	계획 공고	'26년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신청	신청 접수	'26년 12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심사	자체보고서 제출	'27년 2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현장심사	'27년 3월~6월	지정심사단
	심사 결과 통보	'27년 7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01 지정심사 절차 및 시기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단계	지정심사 절차	일정	비고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접수	'27년 8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이의 심의	'27년 8월	지정심사위원회
	이의 심사 결과 통보	'27년 9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결과	충족대학 미충족대학		
	지정 미지정		
보완 지정 심사	공고 및 신청	'27년 9월	미충족 대학
	현장심사	'27년 12월~'28년 2월	지정심사단
	이의신청 및 심의	'28년 3월	지정심사위원회
판정	최종결과 공지	'28년 4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02 주요 시행절차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지정심사 설명회	계획공 고 신청접 수	심사단 구성	현장심사	결과 공지	이의심의	보완지정심사	최종결과 공지
-------------	----------------------	-----------	------	-------	------	--------	------------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지정기준, 신청방법, 심사 절차 및 일정 안내

02 주요 시행절차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지정심사설명 회	계획공고 신청접수	심사단 구성	현장심사	결과 공지	이의심의	보완지정심사	최종결과 공지
-------------	--------------	-----------	------	-------	------	--------	------------

-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지정심사 계획 공고 게시
-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02 주요 시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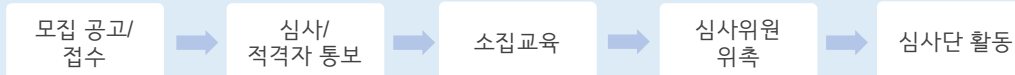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지정심사설명회	계획공고 신청접수	심사단 구성	현장심사	결과 공지	이의심의	보완지정심사	최종결과 공지
---------	--------------	-----------	------	-------	------	--------	------------

-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가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실시하는 지정심사 교육을 수료한 자

구분	자격요건
외부지정심사단	응급구조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학)과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대학 등의 추천을 받거나 심사단에 지원한 사람 (대학별 최대 2명 이내 위촉 예정)
내부지정심사단	중앙응급의료센터 소속 직원으로 구성

구성절차



02 주요 시행절차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지정심사설명회	계획공고 신청접수	심사단 구성	현장심사	결과 공지	이의심의	보완지정심사	최종결과 공지
---------	--------------	-----------	------	-------	------	--------	------------

- 제출된 자체심사보고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대학별 최대 5명 심사단 배정(외부 2명, 내부 3명)
- 현장 심사 종료 시, 심사단은 기관 담당자 서명이 포함된 지정심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심사단과 대상기관 각각 1부씩 보관

심사영역	심사단	심사방법	심사내용
교육과정	외부	현장	· 교육과정 일치도 검증 · 교육 운영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실습교육과정 인터뷰 및 분반 인원 확인
인력	내부		· 인력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교육시설			· 실습실 및 강의실 개수/면적 확인
교육장비	외부		· 장비 구비 및 작동 여부, 장비 대장 대조

02 주요 시행절차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지정심사설명 회	계획공 고	신청접 수	지정심사단 구성	결과 공지	이의심의	보완지정심사	최종결과 공지
-------------	----------	----------	----------	-------	------	--------	---------

- 충족: 심사지표 모든 영역이 '충족' 인 경우
- 미충족: 심사지표 모든 영역 중 '미충족' 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 (중간심사결과) 공문으로 중간 결과 개별 통보

02 주요 시행절차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지정심사설명 회	계획공 고	심사단 구성	현장심사	결과공지	이의심의	보완지정심사	최종결과 공지
-------------	----------	-----------	------	------	------	--------	---------

- 심사 결과 발표 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
- (결과통보) 지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
 - ※ 이의신청 심의 시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02 주요 시행절차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지정심사설명회	계획공고 고 신청접수	심사단 구성	현장심사	결과 공지	이의심의	보완지정심사	최종결과 공지
---------	-------------------	-----------	------	-------	------	--------	---------

- (대상) 미충족 대학 중 4개 심사영역 가운데 최소 1개 영역에서 '충족' 판정을 받은 대학
※ 해당 영역에 포함된 모든 지표를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영역을 '충족'으로 판단함
- (보완기간) 2029학년도 지정심사 결과 통보일(27.7)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내 미충족 지표에 대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 (심사영역) 미충족 지표(충족된 지표 또는 영역은 재심사하지 않음)
- (결과) 보완심사 결과 미충족 지표를 모두 충족한 대학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02 주요 시행절차

Chapter. 2 지정심사 세부 계획

지정심사설명회	계획공고 고 신청접수	심사단 구성	현장심사	결과 공지	이의심의	보완지정심사	최종결과 공지
---------	-------------------	-----------	------	-------	------	--------	---------

-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최종 결과 통보(지정/미지정)

심사결과	내용
지정	모든 심사영역의 심사기준 충족 대학 -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편제 미완성 대학은 '지정'으로 공고하되, 편제 완성 시까지 매년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 연차별 심사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년도 입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예. 2029학년도 지정→2029학번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미지정	지정심사기준 미충족 대학,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 차년도 심사를 통해 양성대학으로 지정되더라도 미지정 시기 입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소급 적용 불가 (예. 2029학년도 미지정→2029학번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2030학년도 지정→2029학번 응시자격 제한, 2030학번 응시자격 유지)



01. 교육과정

- 2027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전체 교육과정

02. 인력

- 2027년 1학기 재직자 기준

03. 교육시설

- 2027년 1학기 확보 기준

04. 교육장비

- 2027년 1학기 보유 기준

04 시범 지정심사 대비 주요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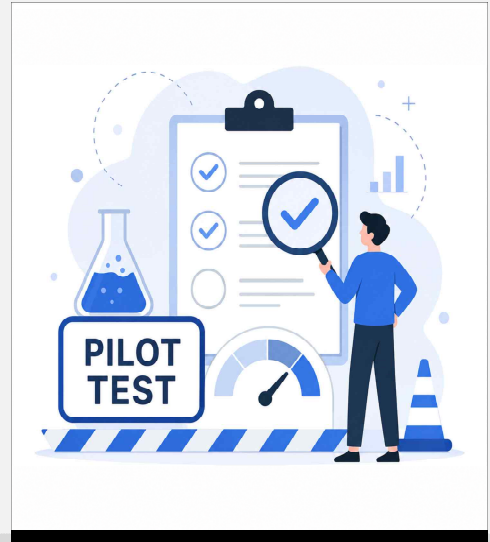
구분	시범 지정심사	2029학년도 정규 지정심사
심사횟수	1회	1회 ※ 보완 지정심사 1회
이의신청	없음	이의신청 절차 시행
적용시기	효력 없음	2029학번 신입생부터 적용
보완 지정심사	없음	대상: 미충족 대학 중 4개 심사영역 가운데 최소 1개 영역 '충족' 대학 방법: 미충족 지표 보완 후 현장 심사 시기: '27.12~'28.2 효력: 2029학번 신입생
심사방법	서면심사→현장심사	현장심사
심사위원역할	외부: 교육과정, 내부: 인력·시설·장비	외부: 교육과정·장비, 내부: 인력·시설
심사위원인력풀	외부: 30명, 위촉 후 교육	외부: 90명 이상, 위촉 전 교육 의무 이수

※ 지표 주요 변경사항은 '지정심사지표' 각 영역에서 설명



2026년 제2차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시범 지정심사 계획

- 지정심사 절차 및 시기
- 주요 시행절차



01 시범 지정심사 절차 및 시기

단계	지정심사 절차	일정	비고
계획	지정심사단 구성	'26년 10월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고	설명회	'26년 8월	중앙응급의료센터
	계획 공고	'26년 9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신청	신청 접수	'26년 9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심사	자체보고서 제출	'26년 10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현장심사	'26년 11월	지정심사단
	심사 결과 통보	'26년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 시범 지정심사는 이의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02 시범 지정심사 주요 시행 절차

Chapter. 3 2026년 제2차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시범 지정심사 계획

01. 시범 지정심사 대상

-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시범 지정심사를 희망하는 기관
 - 한 학교당 응급구조학과 1개에 한하여 지정 신청 가능하며, 분교는 별도 기관으로 간주
 - 학과명이 '응급구조학과'가 아닌 경우 2029학년도 지정심사 신청 전까지 학과명 변경 필요

02. 시범 지정심사 기준

-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지침서의 심사 기준 적용
 - 심사영역, 심사기준, 심사 방법 등

02 시범 지정심사 주요 내용

Chapter. 3 2026년 제2차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시범 지정심사 계획

03. 심사영역 기준 시점

심사영역	기준 시점
교육과정	2026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전체 교육과정
인력	2026년 2학기 재직자 기준
교육시설	2026년 2학기 확보 기준
교육장비	2026년 2학기 보유 기준

04. 심사 방법

- 현장심사(대학별 최대 5명(외부 2명, 내부 3명) 심사단 구성)
 - 학교에서 제출한 자체심사보고서에 대한 지표별 증빙자료 등을 통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05. 결과 통보

- 충족: 심사지표 모든 영역이 '충족' 인 경우
- 미충족: 심사지표 모든 영역 중 '미충족' 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 시범 지정심사는 이의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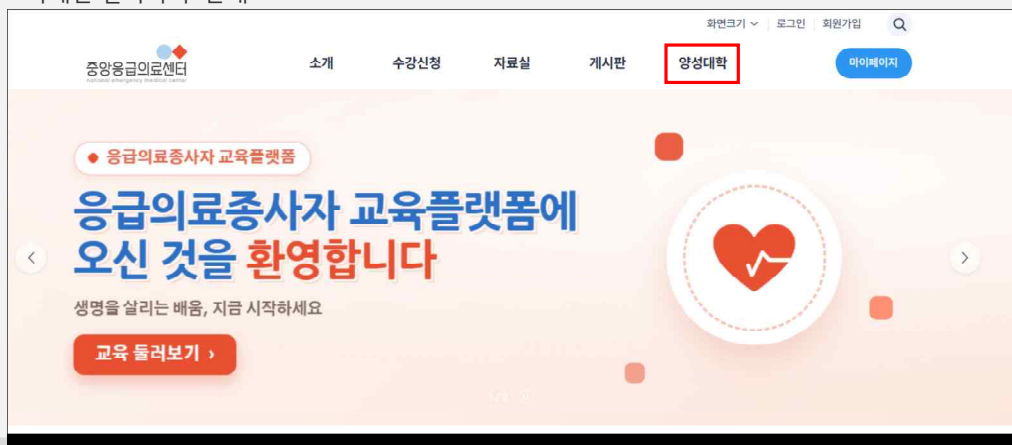
06. 결과 활용

- 제2차 시범 지정심사결과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심사 면제
 - ※ 단,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 서류는 제출하되 변경 사항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 심사 진행
- 제 2차 시범 지정심사 결과에 대해 정규 지정심사 대비를 위한 '대학 컨설팅' 을 진행하며 해당 결과는 대학의 홍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07. 신청 방법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플랫폼 홈페이지(<https://emsedu.nemc.or.kr/main/index.jsp>)

※ 자세한 절차 추후 안내



PAR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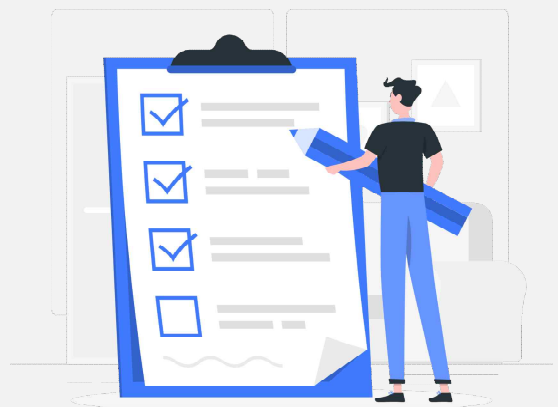
4. 지정심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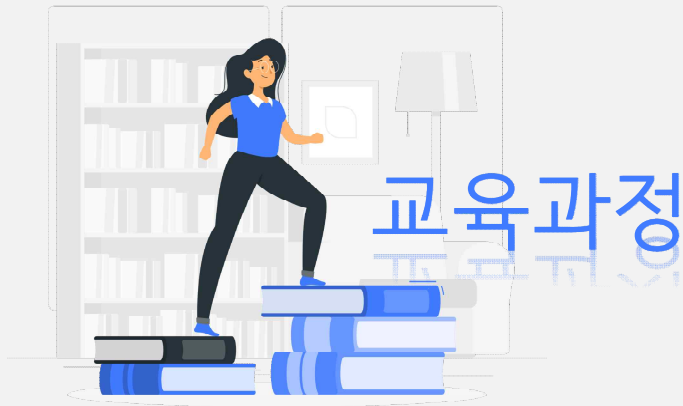
“

지정심사 지표

- 교육과정
- 인력
- 교육시설
- 교육장비

Chapter. 4 지정심사 지표





01 교육과정

Chapter. 4 지정심사 지표

01. 세부지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1-1 교과목 구성 및 학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교육과정 기준에 맞게 운영 -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교과목으로 간주 - 교과목별 기준 학점을 준수하여 운영 '상담·구조·이송 관련 기타 교과목' 과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관련 기타 교과목'은 각각 1개 이상 개설하여 운영 -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는 [지침서의 과목별 세부기준] 내용과 60%이상 일치하도록 운영
1-2 실습 포함 교과목 운영	- 이론과 실습 시수의 적절한 배분 - 통합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실습 교육 - 실습 포함 교과목은 실습시수를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 - 최소 실습 시간은 해당 교과목 학점에 기준 주수 5주 * 를 곱하여 산정함 (예. 3학점 과목 실습 시수 기준은 3학점(시간) * 5주=15시간)

01. 세부지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1-3 실습 교과목 분반	1. 환자구조와 이송, 응급환자관리, 전문기도관리, 통합시뮬레이션 실습은 실습교원 1인당 학생 수 30명 이하로 구성 (단, 당해 수강 학생 수가 증가한 경우 10%(33명)까지 인정)
1-4 임상현장실습	1. 협약을 통한 응급의료센터에서 실습 수행 협약서 포함 내용: (필수) 협약 기간, 실습 시간(휴게시간여부 명시), (권고)주차별 실습교육과정
1-5 구급현장실습	2. 1학점 당 4시간×15주로 60시간 준수 단, 응급실 응급구조사가 3교대 근무임을 고려하여 근무시간대별 가중치 적용 (Day 1시간=1시간, Evening 1시간=1.2시간, Night 1시간=1.5시간)
	1. 협약을 통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동승을 포함한 실습 수행 협약서 포함 내용: (필수) 협약 기간, 실습 시간(휴게시간여부 명시), (권고)주차별 실습교육과정
	2. 1학점 당 4시간×15주로 60시간 준수 단, 구급대원의 근무체계를 고려하여 근무시간대별 가중치 적용 (주간 1시간=1시간, 야간 1시간=1.5시간, 휴일 주간 및 야간 1시간=1.5시간)

시범지정 심사 대비 변경 사항-교육과정

구분	시범지정심사	2029학년도 정규 지정심사
1-4) 임상현장실습	협약서 내 실습시간 필수 포함	- 편제 미완성 대학은 실습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서는 차기 심사 시 제출 - 협약서 포함 내용: (필수) 협약 기간, 실습 시간(휴게시간 여부 명시), (권고)주차별 실습 교육과정 * 협약 체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전년도 실적 증빙과 응급의료기관 승인 공문(계획서)으로 대체 가능 - (참고지표) 학과 예산 편성 내역서(임상현장실습운영비): 실습 관련 예산 편성 여부만 확인
1-5) 구급현장실습	협약서만 증빙자료 가능	- 편제 미완성 대학은 실습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서는 차기 심사 시 제출 - 협약서 포함 내용: (필수) 협약 기간, 실습 시간(휴게시간 여부 명시), (권고)주차별 실습 교육과정 * 협약 체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전년도 실적 증빙과 소방 승인 공문(계획서)으로 대체 가능 - (참고지표) 학과 예산 편성 내역서(구급현장실습운영비): 실습 관련 예산 편성 여부만 확인

01. 정의

-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과목이 교육 목표에 맞게 편성되어 있고 교육영역별 학점 배분이 적절한지 확인

02. 취지 및 목적

- 1급 응급구조사 양성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점 배분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이론과 실습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03. 대학의 관리방안

- 제시된 교육과정을 모두 개설하고 기준 학점을 준수할 것
- 실습 포함 교과목의 경우 실습 시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실습에 필요한 장비 구비
- 1학년 1학기 이후 편입생(편입생, 타 학과 전입생, 자율전공학부 전입생 등)도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04. 측정방법

항목	심사요소	비고
1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성 확인	교육과정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가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간주)
2	교과 영역별 기준 학점 준수 여부 확인	교과 영역별 기준 학점을 준수하였는가 (영역 내 교과목 학점은 대학 자율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
3	기타 교과목 개설 여부 확인	(선택) 상담·구조·이송 관련 기타 교과목 과 (선택)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관련 기타 교과목은 각각 1개 이상 개설하여 운영
4	교육과정 일치도 확인	교육과정 강의계획서 학습목표는 지침서 내 [부록1. 과목별 세부기준 및 주차별 강의 계획서]의 내용과 60%이상 일치하도록 운영 (학습목표 키워드 60%이상 포함하여 작성)

과목별 기준 학점

영역	과목	(권고) 기준 학점	비고
기초의학 (17학점)	해부학	3	
	생리학	3	
	병리학	3	
	응급약리학	3	
	공중보건학	2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12학점)	의학용어	3	
	응급구조학개론	3	
	환자구조와 이송	3	실습 포함*
	재난관리학	3	
	(선택) 상·하·구조·이송 관련 기타 교과목	0~3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12학점)	응급환자평가	4	실습 포함*
	응급환자관리	6	실습 포함*
	(선택)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관련 기타 교과목	0~2	

* 실습시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과목별 기준 학점

영역	과목	(권고) 기준 학점	비고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33학점)	심전도	3	실습 포함*
	기본인명소생술	3	실습 포함*
	전문심장소생술	6	실습 포함*
	전문외상처치학	6	실습 포함*
	전문내과응급처치학	6	실습 포함*
	전문기도관리	3	실습 포함*
	특수상황응급처치	6	임산부, 소아, 노인, 정신과적 응급상황 등을 포함할 것
법령 (3학점)	응급의료관련 법령	3	
통합실습 (15학점)	통합시뮬레이션	6	실습 포함*
	임상현장실습	6	응급의료기관 등 360시간 이상
	구급현장실습	3	소방서 등 180시간 이상
총합		92학점(선택 5학점)	

* 실습시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05. 자체심사보고서

이수구분	편성학년	학기	기존 과목명	분리개설	개설 과목명	학점
■전문응급처치학 총론-기준 12학점 이상						
전공기초	1	1	응급구조학개론	N	응급구조학개론	3
전공필수	2	1	환자구조와 이송	N	환자구조와 이송	3
전공필수	2	2	재난관리학	N	재난관리학	3
전공선택	3	1	응급환자구조이송관리기타교과목	N	응급환자상담	2
전공선택	3	2		N	수상인명구조	2
			소 계			13

06. 증빙자료

항목	제출 자료	비고
1	27학번 신입생 대상 1~3(4)학년 시기별 교육과정 편성표	과목별 학점 및 개설 학기, 편입생 관리 방안 내용 포함
2	교육과정 서류 체크리스트 점검표	지침서 별지2호 서식
3	27학번 강의계획서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교육 내용

01. 정의

- 실습 포함 교과목이 교육목표 및 학습목표에 맞게 편성되어 있고, 이론과 실습 시수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02. 취지 및 목적

- 1급 응급구조사의 실무역량 함양을 위해 실습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교육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론과 실습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임상적 판단력과 술기 역량을 균형 있게 기르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03. 대학의 관리방안

- 이론과 실습 시수를 적절히 편성하고 운영
- 실습 포함 교과목의 경우 실습 시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실습에 필요한 장비 구비
- 실습 운영계획, 출결관리, 평가결과 등 실습교육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보관

04. 측정방법

항목	심사요소	비고
1	이론과 실습 시수의 적절한 배분	최소 실습 시간은 해당 교과목 학점에 기준 주수 5주 * 를 곱하여 산정함 (예. 3학점 과목 실습 시수 기준은 3학점(시간) * 5주=15시간) * 최소 실습 시간 산정을 위한 것으로, 실제 실습 운영 주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실습 시간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따라 분산 또는 집중하여 편성할 수 있음 - 해당 실습 시간은 강의계획서 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실습 중심의 통합시뮬레이션 과목 운영	시뮬레이션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구성·운영

05. 자체심사보고서

기준 과목명	분리개설	개설 과목명	학점	실습 시수
■전문응급처치학 총론-기준 12학점 이상				
응급구조학개론	N	응급구조학개론	3	
★ 환자구조와 이송	N	환자구조와이송	3	15
재난관리학	N	재난관리학	3	
(선택) 상담·구조·이송 관련 기타 교과목	N	응급환자상담	2	
	N	수상인명구조	2	
소 계			13	

06. 증빙자료

항목	심사요소	비고
1	27학번 강의계획서	실습 시수를 확인 가능해야 함 (이론과 실습 구분 필요)

01. 정의

- 실습 교과목의 교육 효과와 안전한 실습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을 일정 규모 이하로 나누어 운영

02. 취지 및 목적

- 학생 개개인의 실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적절한 지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교과목을 적정 규모로 분반하여 운영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03. 대학의 관리방안

- 실습 교과목은 학생 수, 실습 공간, 기자재 및 교원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분반하여 운영할 것
- 분반별로 동일한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의 질이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 분반 운영 현황(분반별 학생 수, 담당 교원, 시간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보관할 것

04. 측정방법

항목	심사요소	비고
1	실습교원 1인당 학생 수 30명 이하 구성	환자구조와 이송, 응급환자관리, 전문기도관리, 통합시뮬레이션 실습은 실습교원 * 1인당 학생 수 30명 이하로 구성 - 단, 당해 수강 학생 수가 증가한 경우 10%(33명)까지 인정 - 해당 실습교원은 강의계획서 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실습교과목의 실습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교원 또는 조교

05. 자체심사보고서

■ 실습 교과목 분반 현황 – 환자구조와 이송 / 응급환자관리 / 전문기도관리 / 통합시뮬레이션				
※ 분반별 최대 학생 수 33명 초과 불가 (실습교원 1인당 30명 이하 권고)				
과목	분반여부	실습교원 수	분반 수	분반 수강신청 인원(정원)
환자구조와 이송	Y	1	2	20
응급환자관리	N	2	1	40
전문기도관리	N	1	1	30
통합시뮬레이션	N	1	1	25

06. 증빙자료

항목	심사요소	비고
1	27학번 강의계획서	과목별 분반인원과 실습교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2	(분반) 출석부, 분반 편성표 등	

01. 정의

- 학생이 의료기관 등 임상실습기관에서 지도자의 지도·감독하에 응급환자의 평가, 처치 및 응급의료 업무를 관찰하거나 직접 수행하며 임상실무능력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는지 확인

02. 취지 및 목적

- 대학에서 습득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하여 응급구조사에게 요구되는 임상수행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상현장실습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03. 대학의 관리방안

- 임상현장실습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실습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계획에 따라 운영할 것
- 학생별 실습 시간 및 실습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실습일지 및 출결 등 실습 운영 기록을 관리할 것
- 임상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습기관 운영, 학생 실습 및 실습환경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04. 측정방법

항목	심사요소	비고
1	협약을 통한 실습 수행	협약*을 통한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 기관)에서 실습 수행 - 협약서 포함 내용: (필수) 협약기간, 실습 시간(휴게시간여부명시), (권고) 주차별 실습 교육과정 * 협약 체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전년도 실적 증빙과 응급의료기관 승인 공문(계획서)으로 대체 가능 ※ 협약 주체는 기관장-병원장(또는 응급의료센터장)이 되어야 함 ※ 편제 미완성 대학은 실습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서는 차기 심사 시 제출
2	1학점 당 실습 시간 준수	1학점당 60시간(4시간×15주) 준수 - 단, 응급실 응급구조사가 3교대 근무임을 고려하여 근무시간대별 가중치 적용 (Day 1시간=1시간, Evening 1시간=1.2시간, Night 1시간=1.5시간) ※ 실습 시간은 해당 기관의 실제 근무시간을 준용함(휴게시간 제외)

05. 자체심사보고서

과목	분리개 설	개설 과목명	학 점	실습 시수	협약서 여부	실습시 간
■ 통합실습 - 기준 15학점 이상						
★ 통합시뮬레이션						
★★ 임상현장실습	Y	임상현장실습1	3		Y	180
		임상현장실습2	3		Y	180
★★★ 구급현장실습						
소 계						

06. 증빙자료

항목	심사요소	비고
1	임상현장실습 협약서	협약 기간, 실습 시간(휴게시간 여부 명시) 포함 - 협약 체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전년도 실적 증빙과 응급의료기관 승인 공문(계획서)으로 대체 가능
2	실습지침서	현장실습 기본사항 현장실습 평가서, 출석부, 실습일지, 보고서, 서약서 양식 현장실습 수업계획(수업 내용) 현장실습 지침 및 유역 규정 등
3	임상현장실습 강의계획서	
4	(편제 미완성 대학) 임상현장실습 계획서	기관장 승인을 받은 계획서 ※ 기관장은 총장을 의미, 학과장 승인 문서 미인정
5	학과 예산 편성 내역서 (임상현장실습 운영비)	실습 관련 예산 편성 여부만 확인 - 실습운영계획서로 대체 가능(실습 운영 예산, 실습비 집행 계획 등 포함)

01. 정의

- 학생이 소방기관 등 구급현장실습기관에서 지도자의 지도·감독 하에 119구급대의 출동, 현장응급처치, 환자평가, 환자 이송 등 구급업무를 경험하며 현장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는지

02. 범위 및 목적

- 학생이 실제 구급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현장 적응능력을 함양하고, 1급 응급구조사에게 요구되는 현장 실무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한 구급현장실습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03. 대학의 관리방안

- 구급현장실습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습계획에 따라 운영할 것
- 학생별 실습 시간 및 실습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실습일지 및 출결 등 실습 운영 기록을 관리할 것
- 구급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습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확보할 것

04. 측정방법

항목	심사요소	비고
1	협약을 통한 실습 수행	협약을 통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동승을 포함한 실습 수행 - 협약서 포함 내용: (필수) 협약기간, 실습 시간(휴게시간여부명시), (권고) 주차별 실습 교육과정 * 협약 체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전년도 실적 증빙과 소방 승인 공문(계획서)으로 대체 가능 ※ 협약 주체는 기관장-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또는 소방서 담당 과장 등)이 되어야 함 ※ 편제 미완성 대학은 실습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서는 차기 심사 시 제출
2	1학점 당 실습 시간 준수	1학점당 60시간(4시간×15주) 준수 - 단, 구급대원의 근무체계를 고려하여 근무시간대별 가중치 적용 (주간 1시간=1시간, 야간 1시간=1.5시간, 휴일 주간 및 야간 1시간=1.5시간) ※ 실습 시간은 해당 기관의 실제 근무시간을 준용함(휴게시간 제외)

05. 자체심사보고서

과목	분리개 설	개설 과목명	학 점	실습 시수	협약서 여부	실습시 간
■ 통합실습 – 기준 15학점 이상						
★ 통합시뮬레이션						
★★ 임상현장실습						
★★★ 구급현장실습	N	구급현장실습	3		Y	180
소 계			15			

06. 증빙자료

항목	심사요소	비고
1	구급현장실습 협약서	협약 기간, 실습 시간(휴게시간 여부 명시) 포함 - 협약 체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전년도 실적 증빙과 소방 승인 공문(계획서)으로 대체 가능 현장실습 기본사항
2	실습지침서	현장실습 평가서, 출석부, 실습일지, 보고서, 서양서 양식 현장실습 수업계획(수업 내용) 현장실습 지침 및 유역 규정 등
3	구급현장실습 강의계획서	
4	(편제 미완성 대학) 구급현장실습 계획서	기관장 승인을 받은 계획서 ※ 기관장은 총장을 의미, 학과장 승인 문서 미인정
5	학과 예산 편성 내역서 (구급현장실습 운영비)	실습 관련 예산 편성 여부만 확인 - 실습운영계획서로 대체 가능(실습 운영 예산, 실습비 집행 계획 등 포함)

인력



02 인력

Chapter. 4 자정심사 지표

01. 세부지표

심사항목	세부지표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2-1 교원 확보	학생정원 기준, 학생 20명 당 1명 이상	
2-2 전임교원 비율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50 이상
2-3 전임교원 중 자격 소지 비율	100분의 70 이상	
2-4 조교 확보	실습 가능한 조교 1인 이상	

구분	시범지정심사	2029학년도 정규 지정심사
2-1 교원확보		- (학생정원 자율전공학부 운영 기준 추가) 1학년 학생 정원은 2학년 모집 정원으로 같음(단, 선발 정원 별도 설정 않는 경우, 자율전공학부 1학년 학생 전체 정원을 1학년 학생 정원으로 간주) - (비전임교원 인정범위 추가) 심사연도 해당 학기에 응급구조학과 교과목을 실제 담당하는 경우, 비전임 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으로 인정
2-4 조교확보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계열 자격·면허 소지자로 실습이 가능한 자 - (증빙자료)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 응급구조학과 전담으로 소속된 직원으로 실습교육 지원이 가능한 자 -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자 - 채용 공백에 대한 유예기준 적용

02 인력 2-1 교원 확보

01. 정의

- 입학정원 학생 20명당 1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 교육 여건이 적정한지 확인

02. 취지 및 목적

- 학생 대비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개별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03. 대학의 관리방안

- 학생 정원 대비 교원 확보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족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교원 채용 및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유지하도록 관리

04. 측정방법 - 학생정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응급구조학과 학년별 입학정원(정원 내)의 합계
-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한 학년의 입학정원
- 응급구조학과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지정신청 당시 재학 중인 학생 학년별 편제상 원상대입

확인

※ 자율전공학부 등으로 운영하여 2학년 응급구조학과 정원을 설정할 시, 1학년 학생 정원은 2학년 모집 정원으로 각음함

편제완성여부	최종 학년	산출공식
완성	3~4개 학년	모든 학년의 입학정원의 합
	3개 학년	2027학년도 입학정원 +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미완성	2개 학년	2027학년도 입학정원 + 2026학년도 입학정원
	1개 학년	2027학년도 입학정원

04. 측정방법 - 교원

- 응급구조학과 소속으로 등록된 교원으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포함하며 정의 기준은 『대학정보공시 6-가. 전체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작성지침을 적용함

- 전임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등

-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기타 교원 등(심사연도 해당 학기에 응급구조학과 교과목을 실제 담당하는

경우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으로 인정 가능)

※ 조교는 교원 또는 전임교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05. 증빙자료

- 입학정원: 1~3(4) 학년별 대학 모집요강, 대학정보공시자료 중 1개
- 교원: 응급구조학과 전체 교원 현황, 교원임용 관련 자료(재직증명서, 인사발령자료 중 1개),
강의경력증명서

06. 산출식

$$\text{학생 20명당 교원 수} = \frac{\text{학생정원}}{20}$$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07. 판정방법

- 응급구조학과 교원 수 $\geq$ 학생 20명당 교원 수인 경우 충족

01. 정의

- 재직 중인 교원 중 전임교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지 확인

02. 취지 및 목적

- 전임교원 중심의 안정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일관성과 학생 지도의 지속성을

03. 대학의 관리방안

- 학생정원에 따른 전임교원 확보율 유지

04. 측정방법 - 학생정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응급구조학과 학년별 입학정원(정원 내)의 합계
-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한 학년의 입학정원
- 응급구조학과 학년별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지정신청 당시 재학 중인 학생, 편제 미완성 학년의 입학정원 합계 등의 경우 2-1 학생정원 기준 동일

편제완성여부	최종 학년	산출공식
완성	3~4개 학년	모든 학년의 입학정원의 합
	3개 학년	2027학년도 입학정원 + 2026학년도 입학정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미완성	2개 학년	2027학년도 입학정원 + 2026학년도 입학정원
	1개 학년	2027학년도 입학정원

04. 측정방법 - 전임교원

- 응급구조학과 소속으로 등록된 전임교원으로 정의 기준은 『대학정보공시 6-가. 전체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작성지침을 적용함
 - 전임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등

유예기준

- 연도별 채용계획서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예정 시점까지의 학과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유예기간으로 인정함. 단,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인 2028년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05. 증빙자료

- 입학정원: 1~3(4)학년별 대학 모집요강, 대학정보공시자료 중 1개
- 전임교원: 전임교원임용 관련 자료(재직증명서, 인사발령자료 등), 강의경력증명서
- (유예인정)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연도별 채용 계획서

06. 산출식

$$\text{전임교원 비율} = \frac{\text{응급구조학과 전임교원 수}}{\text{학생 20명 당 교원 수}} \times 100$$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07. 판정방법

구분	충족기준	비고
대학	60% 이상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0% 이상	

01. 정의

- 전임교원 중 자격 소지자에 해당되는 교원의 비율이 70%이상 확보되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02. 확인지 및 목적

- 응급구조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전문성 있는 이론교육을 제공하기

03. 대학의 관리방안

- 전임교원 중 자격 소지자에 해당되는 교원의 비율을 70%이상 확보

04. 측정방법 - 전임교원

- 응급구조학과 소속으로 등록된 전임교원으로 정의 기준은 『대학정보공시 6-가. 전체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작성지침을 적용함

• 전임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등

04. 측정방법 - 자격소지자

- 1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
- 전문의: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면허를 소지한 자

04. 측정방법 – 비자격자의 자격소지자 전임교원 인정

-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응급구조학과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어, 해당 시점까지 응급구조학 전공 수업을 3년 이상 강의한 사람은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간주함

* 학년도별 정규학기(1학기 또는 2학기)에 강의를 담당한 경우 1년으로 인정하며, 동일 학년도에 1학과 2학기 모두 강의한 경우에도 1년으로 산정함. 계절학과와 일회성 특강은 제외함.

유예기준

- 연도별 채용계획서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예정 시점까지의 학과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유예기간으로 인정함. 단,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인 2028년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05. 증빙자료

- 전임교원: 교원임용 관련 자료(재직증명서, 인사발령자료 등), 강의경력증명서
- 자격소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전문의 면허증
- (유예인정)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연도별 채용 계획서

06. 산출식

$$\text{자격소지자비율} = \frac{\text{자격소지 전임교원 수}}{\text{전임교원 수}} \times 100$$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07. 판정방법

- 자격소지 전임교원 비율이 70%이상인 경우 충족

01. 정의

- 실습교육 지원을 위해 자격을 갖춘 조교가 1인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02. 취지 및 목적

- 전문적인 실습교육 지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조교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실습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03. 대학의 관리방안

- 자격을 갖춘 조교를 1인 이상 확보

04. 측정방법 - 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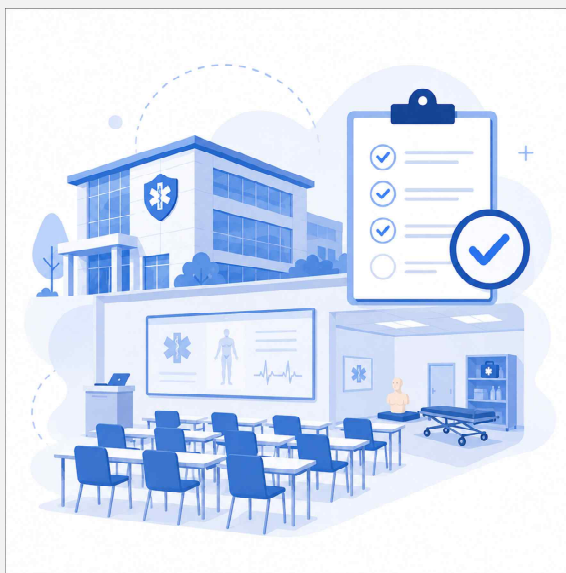
- 응급구조학과 전담으로 소속된 직원으로 실습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
-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자
 - ※ 단, 정규지정심사 공고일 이전부터 응급구조학과 전담 조교로 재직 중인 자는 본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조교로 인정
 - ※ 중도 퇴사 후 채용 공백 등의 이유로 조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채용 공고에 관한 공문서 등 증빙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한해 누적기간 1년당(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60일까지 인정함

05. 증빙자료

- 전담직원: 직원임용 관련 자료(재직증명서, 인사발령자료 등)
- 면허 소지자 및 졸업생: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응급구조학과 졸업생)

06. 산출식

- 자격 기준에 적합한 조교 1인 이상인 경우 충족



교육 시설

심사항목	세부지표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3-1 시설 확보	학생정원 기준, 학생 1명 당 기준 면적 이상	

구분	시범지정심사	2029학년도 정규 지정심사
교육생 수		- (분반 교육생 수 적용) 정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전 학년이 분반으로 운영할 경우 분반별 인원 중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 - (자율전공학부 운영 대학) 응급구조학과 1학년 기초 수업 및 2~4학년 응급구조학과 수업 중 과목별 (분반) 인원 중 최대인원
실습실 운영 원칙		- (실습실 면적) 장비 보관 공간 * 면적 산정 제외 * 장비·소모품 등의 상시 보관을 위해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실제 실습에 활용되지 않는 면적을 말함. 실습 시 장비 사용 또는 학생 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제외하지 않음
보유현황		- (편제 미완성 대학)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실습과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실습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확보 여부 확인 * 기관장 승인을 받은 시설 확보계획 첨부

01. 정의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입학정원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확보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02. 취지 및 목적

- 응급구조 교육과정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제공
- 실습교육의 목표 및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학생 규모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실습실 공간 확보

03. 대학의 관리방안

- 실제 교육환경에 따른 적정 규모의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계획 수립
- 실습실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운영 지침 마련 및 관리 책임자 지정

04. 측정방법 – 보유현황

- 강의실 확보 여부 확인
 - 학년별 1개 이상 확보 여부 확인(타학과 및 실습실과 공동사용가능)
- 실습실(BLS, ATLS,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ACLS) 확보 여부 확인
 - 실습실 4개 확보, 전용 실습실 1개 이상 확보 여부 확인(타학과 및 강의실과 공동활용 가능하나 전용 실습실 1개 이상은)

시설명		기준	비고
실습실	강의실		• 학년별 전용 강의실을 1개 이상 두어야 하며, 다른 학과 공동 활용 가능
	기본인명소생술(BLS)	(1㎡×교육생) + 16.5㎡ 이상	•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실습하기에 적절한 공간이어야 함 • 실습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강의실 및 실습실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하나, 실습을 전용으로 하는 실습실이 1개 이상이어야 함 • 다른 학과와 공동 활용 가능
	전문외상처치술(ATLS)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전문심장소생술(ACLS)		

04. 측정방법 - 교육생 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응급구조학과 학년별 입학정원
-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한 학년의 입학정원
 - ※ 신설하거나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편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 학년별 강의실의 기준은 학년별 정원 기준이며 실습실은 학년별 입학 정원이 가장 많은 학년의 교육생 수 기준
- 정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전 학년이 분반으로 운영할 경우 **분반 인원 중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

04. 측정방법 - 실습실

- 학년별 강의실 및 타 학과와 공동 사용 가능하나 실습실 중 1개는 전용 실습실 배정
 - 면적은 실제 교육 공간 기준으로 산정, 장비 보관 공간*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
- *장비·소모품 등의 **상시 보관을 위해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실습에 활용되지 않는 면적. 실습 시 활용되는 공간은 제외하지 않음.

04. 측정방법 - 보유현황

- 편제 미완성 대학
 - 현재 운영 중인 학년별 강의실 1개 이상 확보 여부 확인
 -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실습과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실습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확보 여부 확인 (최초로 확보하는 실습실은 응급구조학과 전용 실습실로 지정)
 - 향후 운영 예정인 학년 또는 교과목에 필요한 시설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 확보계획*을 제출한 경우 확보 예정 시설로 인정

*대상시설, 확보 방법, 추진 일정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등 포함. 증축 계획서, 시설 배정 변경 계획서, 응급구조학과 전용 시설 전환 계획서 등으로 확인. 기관장(총장) 승인 문서

- 확보 예정 시설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또는 실습과목이 운영되기 전까지 확보 운영
- 편제 완성 시에는 모든 시설 확보 운영, 편제 완성될 때까지 매년 시설 확보 및 운영 여부 확인

05. 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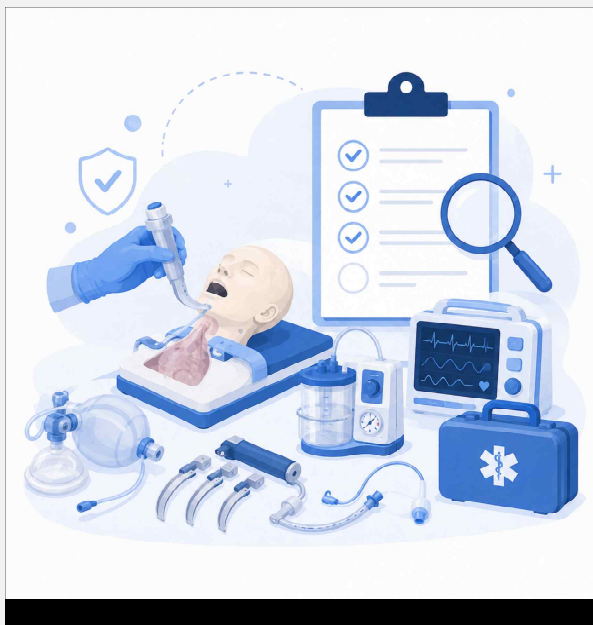
- 응급구조학과 시설 도면 및 사진
 - 시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실제 사진(장비 보관 공간이 포함된 경우 표시)
- 응급구조학과 운영계획서
 - 시설 전용 사용 지정서
 - 관리 규정 및 운영 지침
- (편제 미완성 대학)기관장 승인을 받은 내부 계획서(증축계획서, 시설 배정 변경 계획서 등)

06. 산출식

- 기본면적: $(1\text{m}^2 \times \text{교육생}) + 16.5\text{m}^2$ 이상

07. 판정방법

- 학년별 1개 이상의 강의실과 실습실(BLS, ATLS,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ACLS)을 모두 보유하고 해당 시설 면적기준이 $(\text{실제 면적} \div \text{기본면적}) \times 100 \geq 100$ 인 경우 충족



교육 장비
표준 장비

심사항목	세부지표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4-1 장비 확보	실습과목 분반 인원 기준, 장비별 보유기준 상이	

구분	시범지정심사	2029학년도 정규 지정심사
교육생 수		- (자율전공학부 등) 응급구조학과 1학년 기초 수업 및 2~4학년 응급구조학과 수업 중 과목별 분반 인원 중 최대인원
보유현황		- (편제 미완성 대학) 편제가 완성된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장비 확보 여부 확인 * 기관장 승인을 받은 장비 구매계획 첨부

01. 정의

- 실습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비를 보유기준에 따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02. 취지 및 목적

- 응급구조 교육과정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실습장비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제공
- 실습교육의 목표 및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학생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량의 교육장비 확보

03. 대학의 관리방안

- 보유기준에 따른 적정 수량의 교육장비 확보 및 계획 수립
- 응급구조학과 교육장비 자산 등록 및 관리 체계 구축

04. 측정방법 – 장비명

- 자산등록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관리 대장에 소유(관리) 부서가 응급구조학과로 등록된 장비의 명칭
 - 장비와 소모품은 각 대학의 자산물품관리 관련 규정에 따른 분류를 인정하며, 소모품은

04. 측정방법 – 물품관리대장 책임 관리 내역 등 응급구조학과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응급구조학과의 학년별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학년의 교육생 수로 적용
- ※ 신설, 폐지, 미완성, 자율전공학부 등 위 함설 수 기준 동일 적용
-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한 학년의 입학정원 수로 적용
- 실습과목 분반 시 분반 인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준 인원의 10% 초과된 기준까지 인정 (예. 30명 기준인 경우 33명까지 인정)

04. 측정방법 – 보유현황

● 보유기준에 따른 적정 장비 개수 보유 현황 확인

※ 학생 수를 장비별 기준 인원으로 나눈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보유기준 수량 산정

● 편제 미완성 대학

-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장비 보유 수량 및 상태 확인
- 장비는 해당 교과목의 교육 내용 및 수업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 장비 보유수량은 지정기준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확인
- 향후 운영 예정인 교과목에 필요한 장비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비 확보계획*을 제출한 경우 확보 예정 장비로 인정

*대상장비, 수량, 확보 방법, 추진 일정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등 포함. 구매계획서,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장비 확보계획서 등으로 확인. 기관장(총장) 승인 문서.

- 확보 예정 장비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전까지 확보되어야 함
- 편제 완성 시에는 모든 장비 확보 운영, 편제 완성될 때까지 매년 장비 확보 및 운영 여부 확인

04. 측정방법 – 장비 관리 여부 확인

- 자산등록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관리대장의 해당 장비 등록 여부 확인
- 실제 보유 장비의 관리번호와 자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관리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장비의 정상 작동 상태 및 관리 현황 점검

04. 측정방법 – 장비상태 확인

● 장비의 정상 작동 상태 및 관리 현황 점검

장비		보유기준	비고
구급차 또는 구급차 모형		1개 이상	
중증도 분류 훈련 세트		1개 이상	
다수사상자 도상 훈련키트		15명당 1세트	분류표, 분류시트, 분류띠 등이 포함된 다수 사상자 실제 훈련세트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3명당 1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도상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트
기본 심폐소생술 마네킹	성인(전신)	10명당 1개	충전, 충격, 리듬 변경 가능
	성인(상반신)	5명당 1개	
	소아	10명당 1개	상반신 포함
	영아	5명당 1개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실습할 수 있는 마네킹
성인 전문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30명당 1개	전문심폐소생술(ACLS) 실습 가능한 시뮬레이터급 마네킹, 제세동 리듬 표출 및 기도관리 기능
교육용 수동제세동기		15명당 1개	
기계식 가슴압박 소생기		30명당 1개	교육용 장비 포함, CPR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동 압박 깊이 및 속도 추측
12유도 심전도 측정기계		30명당 1개	리드 연결 후 실제 측정 가능

04. 측정방법 – 장비상태 확인

장비		보유기준	비고
기도유지 마네킹	성인	5명당 1대	
	소아	15명당 1대	기관내삽관 마네킹
	영아	15명당 1대	
	기도폐쇄	5명당 1대	마네킹 또는 조끼 형태의 실습 장비
비디오 후두경		15명당 1개	영상 결과 모니터링 가능
이동형 인공호흡기		1개 이상	교육용 장비 포함, 실제 작동 호흡량 조절 가능
기관 내 삽관 세트		5명당 1개	후두경, 튜브, 튜브 고정기 등이 포함된 세트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10명당 1개	교육용 장비 포함,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 가능
성문외기 도기	후두마스크(LMA)	5명당 1개	
	후두관 기도기	5명당 1개	
	아이젤(I-gel)	5명당 1개	
휴대용 산소소생기		15명당 1개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산소통 포함, 산소 유량 조절 가능
휴대용 흡인기		5명당 1개	압력 및 흡입 기능 작동

04. 측정방법 – 장비상태 확인

장비		보유기준	비고
수동식 인공호흡 기 (BVM)	성인	5명당 1개	
	소아	15명당 1개	
	영아	5명당 1개	
전신 마네킹	구조실습	10명당 1개	견인부목 실습이 가능한 마네킹
	외상처치	10명당 1개	외상상처 모듈이 부착 가능한 마네킹
경추보호대 세트		2명당 1개	복합형 포함
외상표시 모듈세트		15명당 1개	
지혈실습 마네킹		10명당 1개	출혈 모듈 작동, 토니켓 사용 시 지혈 기능 작동, 접합 부위 손상까지 실습이 가능한 마네킹
긴 척추 고정판		5명당 1개	머리 고정대 포함
차량 구출 고정대		5명당 1개	
골반 고정대		10명당 1개	
주 들것		15명당 1개	

04. 측정방법 – 장비상태 확인

장비		보유기준	비고	
기타 들것	분리형	10명당 1개		
	바구니	30명당 1개		
	가변형	10명당 1개		
	계단형	30명당 1개		
부목	공기	10명당 1개	압력 유지 가능	고정 가능
	진공	10명당 1개		
	견인	10명당 1개		
	패드	10명당 1개		
산소포화도 측정기		5명당 1개		
혈당 측정기		5명당 1개		
정맥주사 마네킹		5명당 1개		
근육주사 모형		5명당 1개		

04. 측정방법 – 장비상태 확인

장비	보유기준	비고
분만 마네킹	10명당 1개	탯줄 결찰 및 절단 실습이 가능한 마네킹
분만 세트	10명당 1개	탯줄 집게(Cord Clamp), 구형흡인기, 가위 등 포함
응급 침대	30명당 1개	
입인두기도기 세트	5명당 1개	
코인두기도기 세트	5명당 1개	

05. 증빙자료

- 응급구조학과 자산 등록 대장
 - (소모품) 구매내역, 물품관리대장, 재고관리 내역 등
- 장비 현황, 장비 사용 매뉴얼 및 관리 지침
- (실습과목 분반 시) 분반 인원 확인을 위한 출석부 등
- (편제 미완성 대학) 현재 수업 편제에 따른 장비 구비 현황, 기관장 승인을 받은 내부계획서

06. 산출식

- 장비 충족률: (정상 작동되는 장비의 보유수량÷보유기준 수량) × 100

07. 판정방법

- ‘(정상 작동되는 장비의 보유수량÷보유기준 수량) × 100 ≥ 100’ 인 경우 충족

“질의응답



질의 응답

Q

교과목명이 저희 학교의 교과목명과 달라도 되나요?

A

네, 교과목명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자체심사보고서에 학교 운영 교과목을 시행규칙에 분류된 교과목으로 구분해주시면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내용과 일치율로 심사합니다.

예) 응급환자평가(시행규칙 교과목)-AI 환자평가(실제교과목)

질의 응답

Q 한 개의 영역의 기준학점이 충족되면, 세부 교과목 구성은 대학 자율인가요?

A 네,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는 기준학점이 총 12학점입니다. 응급환자평가-환자관리-평가 및 관리관련 교과목과 개별 학점을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총 12학점만 충족하면 됩니다.

질의 응답

Q 27학번의 전체 강의 계획서를 제출할 때, 학교 시스템에서는 해당 학기 강의 계획서만 등록됩니다. 학교 시스템 아닌 별도의 서식으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별도의 서식 작성 시 평가방법, 교재 및 참고 문헌 등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별도의 서식으로 강의계획서를 작성해주세요. 제출된 강의계획서는 강의 개설 시 동일한 강의계획서로 강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규 강의계획서처럼 모두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해주세요.(주차별 강의계획서, 이론/실습 구분, 실습 조교 명시, 강의에 필요한 실습 장비 등)

질의 응답

Q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하는 교과목일 경우, 교내 실습을 진행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면 되나요?

A 강의계획서 주차별 강의계획서에 이론과 실습을 구분하여 주시고, 실습 교과목인 경우 담당 실습 교원도 함께 명시해주세요.

질의 응답

Q 전임교원은 비정년 교수도 포함인가요?

A 전임교원의 정의에서 정년여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1년 이상 임용되어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교내 규정에 의해 보수 수당을 받는 교원 등 지침서 내 교원 작성지침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의 응답

Q 장비 유효기간도 심사 당일 기준에 충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실습용 장비이므로 장비 유효기간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보유기준 및 정상 작동 여부만 확인합니다.

질의 응답

Q 계단식 강의실의 경우 실습실과 겸용으로 사용가능 한가요?

A 네. 하지만 실습실 용도에 맞게 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 심사 시 심사위원의 심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질의 응답

Q 실습실 면적에서 장비 보관 공간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실습실 내부의 기둥, 벽체 등 건축 구조물에 대한 면적도 제외되나요?

A 건축 구조물에 대한 면적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단, 도면과 실습실 형태가 다를 경우, 실제 형태로 다시 면적을 산정합니다.

”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설명회

감사합니다

문의게시판



지정심사 Q&A 게시판

지침서 배송지



지정심사 지침서 배송지 변경(추가)